

<b>의안 번호</b>	<b>2509</b>	<b>【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제출 일자 : 2025. 11. 11.(화)
- 제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11.(화)
-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8.(목)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변경사유

- 행정안전부 「202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대상지(반구시장)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정 및 배분예정(예치금 200,000천원 증액, 25년 12월 예정)
- 2024년 예치금이월액 확정에 따른 수입·지출액 변동분 반영(24년 결산)

나. 세부내역

- 수입내역

(단위:천원)

세입과목(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b>1,621,936</b>
세외수입 (200)	경상적 세외수입 (210)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201-05)	35,00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1)	36,044
	임시적 세외수입 (220)	기타수입	그 외수입 (224-07)	210,000
	지방행장제재·부과금 (230)	과태료	기타과태료 (234-02)	30,000
보조금(500)	시도비보조금등 (520)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521-01)	108,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00)	보전수입등 (710)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714-01)	1,202,892

- 지출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천원)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1,621,936
재무활동	보전지출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	예치금(602)	일반예치금 (01)	870,721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 잔액 반납	반환금기타 (802)	국고보조금반환금 (01)	1,095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 이자 반납			89
		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 잔액 반납			1
		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 이자 반납			30
도시 디자인 구현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 발전기금)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02)	30,000
			재료비(206)	재료비(01)	20,000
			시설비및부대비 (401)	시설비 (01)	30,000
		이름다운 간판 정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자본사업보조 (01)	40,000
		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	재료비(206)	재료비(01)	10,000
		구역전시장 간판개선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5,000
			시설비및부대비 (401)	시설비 (01)	615,000

- 지출계획(안)

(단위:천원)



예치금 회수 감액 : 1,218,060천원→1,202,060천원(△15,168천원)

기타수입(반구시장 간판개선사업) 증액 : 75,000천원→275,000천원(200,000천원)

- 지출계획은

예치금 증액 : 685,889천원→ 870,721천원(184,832천원)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184,832천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이 기정액 687,104천원에서 871,936천원으로 184,832천원이 증가하여 26.9% 변경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24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예치금과 간판개선사업비를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